

항행안전지도집록

도 쿄 만
이 세 만
(나고야항 포함)

세 토 내 해
(간몬해협 포함)

개정 31 판

2011 년 7 월

해 상 보 안 청

교통부안전과

해상보안청은 해상교통안전법등의 규정을 근거로 도교만, 이세만 및 세토내해에서의 선박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관구해상보안본부는 한층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역의 실태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한 항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상기 해역 및 나고야항 및 간몬해협에 있어 제 3~7관구 해상보안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행안전지도의 내용을 집록한 것입니다.

※ 게재상의 사정으로, 지도문서의 원본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31 판에 대하여 (갱신내용)

- 항칙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내용 변경

본 지도집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 거 대 선 」 . . . 길이 (전장) 이 200 미터 이상의 선박

「 위 험 물 적 재 선 」 . . . 80 톤 이상의 화약물을 적재한 총톤수 300 톤 이상의 선박
· 인화성 고압가스를 산적한 총톤수 1,000 톤 이상의 선박
· 인화성 액체류를 산적한 총톤수 1,000 톤 이상의 선박
· 200 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을 적재한 총톤수 300 톤 이상의 선박

「 물 건 예 항 선 등 」 . . . 선박, 뗏목 그 외의 물건을 끌거나, 밀며 항행하는 선박

「 장 대 물 건 예 항 선 등 」 . . . 선박, 뗏목 그 외의 물건을 당기거나 밀며 항행하는 선박으로, 예인선의 뱃머리로부터 해당 물건의 뒤쪽 끝까지 또는 해당 밀기선의 선미로부터 해당 물건의 선단까지의 거리가 200 미터 이상의 것.

「 거 대 선 등 」 . . . 「거대선」, 「준거대선」, 「위험물적재선」 및 「물건 예항선 등」을 말한다.

「 진 로 경 계 선 등 」 . . . 진로를 경계하는 선박, 소방설비를 비치한 선박 및 측방[側方]을 경계하는 선박이며 해상보안청고시에 의한 기준을 충족한 것.

「 항 로 통 보 」 . . .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거대선 등의 항행에 관한 통보」를 말하며 거대선, 장대물건예항선 등 및 대형 위험물적재선에 대해서는 항로입항일의 전일 정오까지, 소형 위험물적재선에 대해서는 항로입항시각 3 시간 전까지 각각 통보한다.

「 위 치 통 보 」 . . . 선박이 해상교통센터의 레이더감시해역내를 통항하는 경우 레이더 영상에서 해당선박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위치통보라인을 통과하는 경우에 하는 통보.

「 사 전 통 보 」 . . . 항칙법에 정해져 있는 통보를 말하며 대상선박은 항로 등 입항예정일의 전일 정오까지 통보를 한다.

○ 우라가수도항로와 나카노세항로 및 부근해역

제 3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수로안내인의 승선
다음에서 언급하는 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킬 것.
 - (1) 외국선박
 - (2) 운항경험 및 입만[入灣]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선장이 승선하는 일본선박
2. 진로경계선 등의 배치
항로 출항 후에도 안전한 항행이 확인될 때까지 진로경계선박 등을 배치할 것.
3. 항로 출입구 부근해역에서의 항법
 - (1) 도쿄 방면에서 가와사키 앞바다를 남향하는 선박은 가와사키항로 제 2 호등표에서 동쪽으로 1,000m 이상 떨어져서 항과할 것.
 - (2) 나카노세 서쪽 해역에 묘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도쿄만 나카노세 서방 제 3 호, 제 2 호, 제 1 호의 각 등표 및 우라가수도 항로 중앙 제 6 호등부표를 묶은 선으로 부터, 1,000 미터 이상 떨어져 묘박할 것.
 - (3) 우라가수도항로를 출항하는 남향선은 항로 출구 부근에서 항로에 들어가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할 대각도의 변침 등을 하지 말 것.
 - (4) 쓰루기자키 앞바다를 항과하여 우라가수도항로에 입항하는 선박은 남향선과 항로 입구 부근에서 교차하지 않도록 만구(灣口) 중앙 부근을 항행할 것.
4. 우라가수도항로에서의 선박교통의 안전확보
대체로 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선박은 오후 4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는 다음과 같은 항행을 하지 말 것.
 - (1) 우라가수도항로 서쪽 해역에서 동[同] 항로를 횡단하는 항행.
 - (2) 우라가수도항로를 횡단하여 항로 서쪽 해역으로 나가는 항행.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1) 및 (2) 의 항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에 항행할 것.
 - ① 해상교통센터와의 긴밀한 연락에 의한 항로상황의 파악.
 - ② 해상교통규칙 (특히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항법 및 행선신호 표시) 의 충실한 준수.
 - ③ 적절한 경계[把守]의 실시.
 - ④ 안전한 속력에 의한 항행.
 - ⑤ 진로경계선 및 예선(曳船) 등의 유효활용
5. 속력 제한
선박은 항로외의 만내 수역에서도 고속력으로 항행하지 말 것.
6. 통항 시간의 제한 (해상교통안전법 제 23 조에 따른 지시)
 - (1) 위험물적재선이며 총톤수 50,000 톤 (적재한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총톤수 25,000 톤) 이상의 선박은 일출 1 시간 전에서 일몰시까지 사이에 우라가수도로에 들어갈 것.

다만, 적재한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총톤수 25,000 톤 이상의 선박은 진로경계선 및 소방설비선을 각각 (거대선이 아닌 경우에는 소방설비선만) 배치하는 동시에 진로경계선 또는 소방설비선에 암시쌍안경 등을 탑재하는 것에 의하여 북항선은 일몰시에서 05 시 (일출시각이 06 시 이전인 경우는 일출 1 시간 전) 까지, 남항선은 20 시에서 일출 1 시간 전까지 사이에도 항로에 들어갈 수 있다.

(2) 장대물건예항선 등은 일출시부터 일몰 1 시간전 사이에 우라가수도항로에 들어갈 것.

7. 항로밖에서의 대기지시 발령시 대기장소

시야불량등에 의해 항로밖에서의 대기지시가 발령되고 있는 경우, 입만시[入灣時]에는 최대한 만외[灣外]에서 또 출만시[出灣時]에는 최대한 통항 선박이 적은 해역에서 대기할 것.

8. 자동조타장치 사용제한

도쿄만내를 항행하는 경우는 자동조타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수동조타로 항행할 것.

9.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의 준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정된 위험물적재선은 선수 및 선미에 각각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FIRE WIRE) 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할 것.

10. 위치통보 등 (제 1 그림 참조)

길이 50 미터 이상의 선박(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및 총 톤수 100 톤 이상이며 최대 탑재 인원이 30 명 이상의 선박은, 도쿄만에 출입만[出入灣]하거나 만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첫 위치통보라인에 달했을 때에 도쿄만해상교통센터로 위치통보 할 것.

< 통 보 사 항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나 현재위치 또는 통과한 위치통보라인의 약칭 및 통과시각(일본표준시 24 시제)

다 행선지

11. 도쿄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유지

(1) V H F 무선전화(CH16, 156.8MHz) 를 비치한 선박은, 도쿄만해상교통센터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도쿄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을 유지할것.

(2) 안개정보

우라가수도의 시정이 2,000 미터 이하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수시 방송하고 있다.

제 3 관구해상보안본부 F3E 156.6MHz (CH12) 일본어 (필요에 따라 영어)
(요코하마보안)

12. 해도 등의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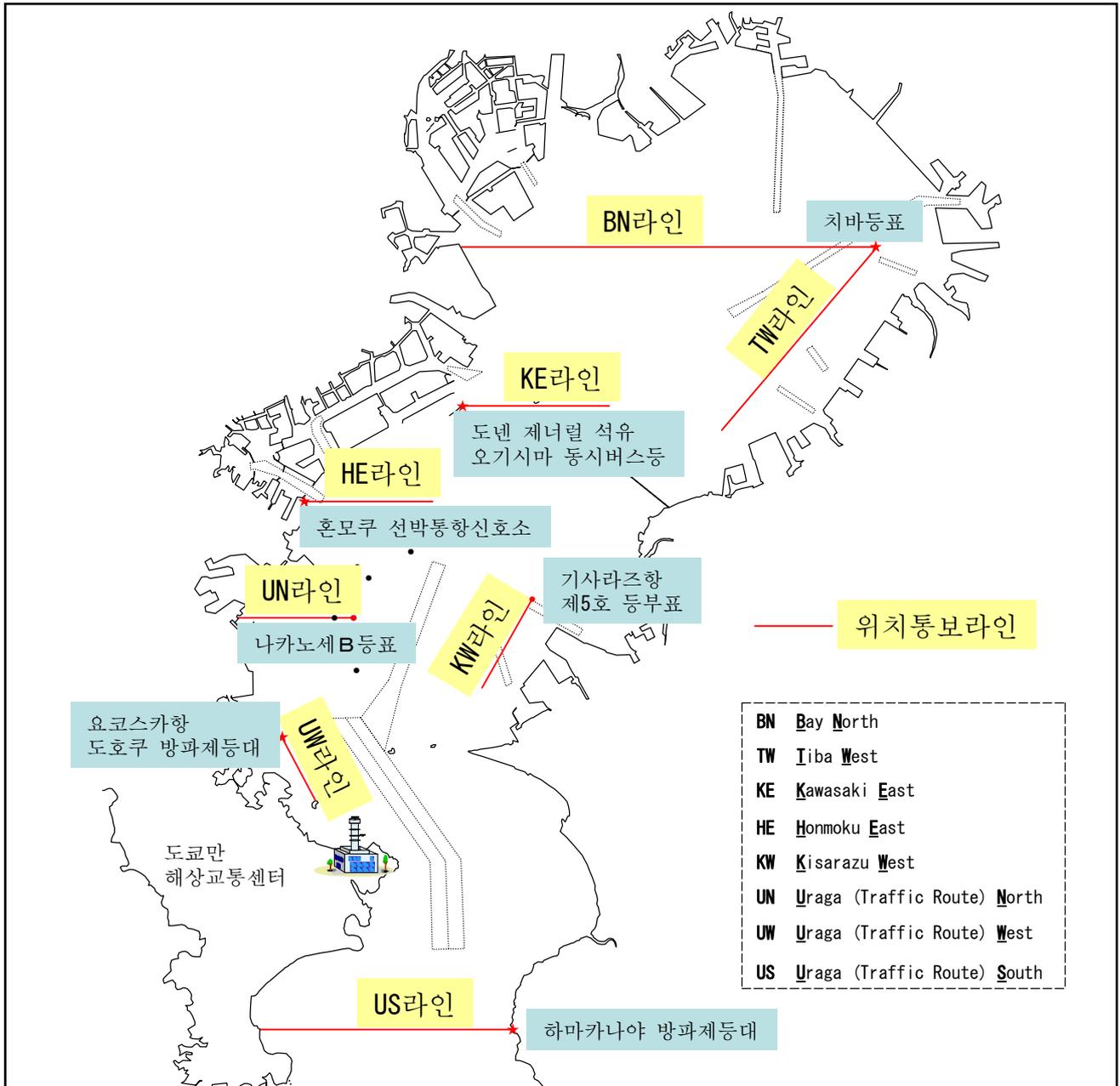
도쿄만에 출입하는 선박은 적어도 다음의 해도 등을 비치하여 최신의 항만사정을

사전에 파악할 것.

해도 번호 (해상보안청 간행)

W90	도쿄만
W1061	도쿄만 북부
W1062	도쿄만 중부
W1081	우라가수도

제 1 도 [圖] 위치 통보 라인



명칭	약칭	위치
도쿄만 북부	BN라인	치바등표(북위35도34분05초, 동경140도02분45초)에서 270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치바 앞바다	TW라인	치바등표(북위35도34분05초, 동경140도02분45초)에서 225도15, 900m의지점까지 그은 선
가와사키 오기시마 앞바다	KE라인	도넨 제너럴 석유 오기시마 동시버스등(북위35도29분11초, 동경139도47분07초)에서 90도 9, 900m의 지점까지 그은 선
혼모쿠 앞바다	HE라인	혼모쿠 선박통항 신호소(북위35도26분20초, 동경139도41분23초)에서 90도 8, 400m의 지점까지 그은 선
기사라즈항로	KW라인	기사라즈항 제5호 등부표(북위35도23분21초, 동경139도49분51초)에서 동[同] 제6호 등부표(북위35도23분08초, 동경139도49분42초)를 거쳐 210도로 기사라즈항 경계선까지 그은 선
우라가수도항로 북부	UN라인	도쿄만 나카노세 B 등표(북위35도22분50초, 동경139도43분04초)에서 270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우라가수도항로 서측	UW라인	요코스카항 동북 방과제등대(북위35도19분09초, 동경139도40분31초)에서 사루시마 북단까지 그은 선
우라가수도항로 남부	US라인	하마카나야 방과제등대(북위35도10분15초, 동경139도48분58초)에서 270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도쿄만 북부 해역에 있어서의 항행 방법등에 대해

2010년 8월 1일
도쿄항공국
제3관구해상보안본부

도쿄국제공항 D활주로의 공용개시에 수반해,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0월 1일부터 도쿄앞바다 등부표, 도쿄국제공항 D 활주로 주변 해역 및 도쿄만 아쿠아 라인 부근 해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의

- (1) 「선박 최고점」 : 선방상의 구조물에서 가장 높은 부위
- (2) 「선박고기준면」 : 항공법의 규정에 의해 공항 주변으로 설정되는 「제한표면」 중에서 「진입표면 (경사 2.0%)」에 대해서, 「비행 방법 설정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장해물 평가 표면(OAS)(경사 2.85%)」의 생각을 채용한 기준
기준면의 경사 : 2.85%
기준면의 범위 : 진입구역(진입표면을 투영[投影]한 구역)과 같다.
- (3) 아쿠아라인 동수로 : 「해상교통안전법 제 25 조 제 2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경로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해진 해역

2 도쿄앞바다 등부표 주변해역

- (1) 도쿄앞바다 등부표 (북위 35도 32분 30초, 동경 139도 51분 24초)를 중심으로 한 반경 1,850 미터의 원내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동[同]灯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항행할것.
- (2) 선박은, 도쿄앞바다 등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1,850 미터의 원내에는 묘박하지 말 것.

3 도쿄국제공항 D 활주로 주변해역

- (1) 수면상의 높이(수면으로부터 선박 최고점까지의 높이)가 28.4 미터 이상의 선박은, 도쿄국제공항 D 활주로로 설정된 선박고기준면해역에서 도쿄국제공항 D 활주로 동방 등표(북위 35도 32부 41초, 동경 139도 49부 51초)를 A 점으로 해, B 점 도쿄서항로 제 1 호등표(북위 35도 32부 59초, 동경 139도 50부 19초), C 점(북위 35도 33부 15초, 동경 139도 49부 53초), D 점(북위 35도 32부 53초, 동경 139도 49부 35초)을 차례대로 묶은 선 및

A 점과 D 점을 묶은 선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에 침입하지 말 것.

- (2) 수면상의 높이가 28.4 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상기 A·B·C·D 점을 차례차례 묶은 선 및 A 점과 D 점을 묶은 선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을 항행할 때는, 도쿄국제공항 D 활주로 동방 등표(북위 35 도 32 부 41 초, 동경 139 도 49 부 51 초)의 북동측의 해역을 항행하는 것.

4 도쿄만 아쿠아라인 부근해역

- (1) 다음에서 언급하는 선박은,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를 항행 할 것.
- ① 나카노세항로를 출항후, 도쿄만 아쿠아라인선을 횡단해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려는 총톤수 3,000 톤 이상의 선박
 - ② 나카노세항로 제 8 호등표와 아쿠아라인 동수로 남동단(북위 35 도 27 부 14 초, 동경 139 도 51 부 31 초)을 묶은 선 및 도쿄만아쿠아라인선을 차례대로 횡단해 북쪽 방향으로 항행하려고 하는 총 톤수 3,000 톤 이상의 선박
 - ③ ②이외에 도쿄만아쿠아라인선을 횡단해 항행하려고 하는 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선박(즈루미 항로를 항행하지 않고 케힌항 카와사키구에 입출항 하는 선박은 제외)
- (2) 선박은, 도쿄만 아쿠아라인 동수로에는 묘박하지 말 것.

※ 주의) 아쿠아라인 동수로

별도[別圖]의 ①②③④의 각점을 차례대로 묶은 선 및 ①점과 ④점을 묶은 선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2010년 7월 1일시행)

- ① (수로 남서단 : 북위 35 도 28 분 40 초 동경 139 도 49 분 21 초)
- ② (수로 북서단 : 북위 35 도 30 분 13 초 동경 139 도 50 분 55 초)
- ③ (수로 북동단 : 북위 35 도 28 분 45 초 동경 139 도 53 분 04 초)
- ④ (수로 남동단 : 북위 35 도 27 분 14 초 동경 139 도 51 분 31 초)

○ 이라코수도 항로 및 부근 해역

제 4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수로안내인의 승선
다음에서 언급하는 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킬 것.
(1) 외국선박
(2) 전장 130 미터 이상의 위험물적재선인 일본선박
2. 진로경계선 등의 배치
항로 출항 후에도 안전한 항행이 확인될 때까지 진로경계선 등을 배치할 것.
3. 통항시간의 제한 (해상교통안전법 제 23 조에 따른 지시)
위험물적재선이며 총톤수 50,000 톤 (적재한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총톤수 25,000 톤) 이상의 선박은 일출 1 시간 전부터 일몰시까지 항로에 입항할 것.
다만, 적재한 위험물이 액화가스이며 총톤수 25,000 톤 이상의 선박은 진로경계선 또는 소방설비선에 암시쌍안경 등을 탑재하는 것에 의하여 19 시 (일몰시각이 19 시 이후인 경우는 일몰시) 부터 03 시까지도 항로에 입항할 수 있다.
4. 추월제한
항로내는 물론이고 항로 출입구 및 변침점 부근에서는 가능한 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말 것.
5. 항로통보 및 변경통보
(1) 항로통보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통보할 것.
가 출발항
나 항로 항행 중의 수로안내인의 유무
(2) 항로통보를 한 선박은 항로입항예정시각 3 시간 전부터 「7. 위치통보」의 통보를 할 때까지 사이에 항로입항예정시각을 5 분 이상 변경하는 경우, 그때마다 변경통보를 할 것.
6. 관제 상황의 확인
(1) 항로를 항행하고자 하는 선박은 이라코수도 항로관제신호소가 실시하는 신호에 각별히 주의하여 관제 상황의 확인을 할 것.
(2) 전장 130 미터 이상의 선박은 전항[前項] 신호소가 하는 신호를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VHF 무선전화 등으로 이세만해상교통센터로 관제 상황을 확인할 것.
7. 위치통보 (제 2 그림 참조)
길이 50 미터 이상의 선박 및 길이 100 미터 이상의 물건예항선등※ (선박 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은, 최초의 위치통보 라인을 통과했을 시에 이세만 해상 교통센터로 위치통보 할 것.
※ 예인선의 뱃머리부터 해당 예인선이 당기는 물건의 후단까지 또는 밀기선의 선미로부터 물건의 침단까지의 거리가 100 미터 이상인, 선박, 뗏목 그 외의 물건을 당기거나, 밀며 항행하는 선박

〈통보사항〉

가. 선명

나. 현재위치 또는 통과한 위치통보라인의 약칭 및 통과시각(일본표준시 24 제시)

8. 이세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 유지

V H F 무선전화 (CH16, 156.8MHz) 를 비치한 선박은, 이세만해상교통센터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이세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을 유지 할 것.

또 CH16 이 폭주[輻輳]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사카만해상교통센터에서 CH13 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 을 비치한 선박은 CH16 과 함께 CH13 을 청취할 것.

9. 항로입항제한 시의 대기 장소

시계[視界]가 좁을 때 등으로 인하여 항로입항이 제한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

(1) 북항선

이세만 제 1 호 등부표에 이루지 않는 해역에서 일반 선박의 통항로를 피한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할 것.

(2) 남항선

최대한 출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미 항행 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세만 제 3 호 등부표에 이루지 않는 해역에서 일반 선박의 통항로를 피한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할 것.

10.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의 준비 (제 3 그림 참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험물적재선은 선수 및 선미에 각각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FIRE WIRE) 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놓을 것.

11. 해상교통정보 등

안개정보

이라코수도의 시정이 2 해리 이하가 된 경우 다음의 기관에서 임시 방송한다.

제 4 관구 해상보안본부 (나고야보안) F3E 156.6MHz (CH12) 일본어 및 영어

12. 해도의 비치

이세만 및 미카와만에 입항하는 선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해도등을 비치하여 최신의 항만사정을 사전에 파악할 것.

해도등의 번호 (해상보안청 간행)

W1051 이세만

W1053 이라코수도 및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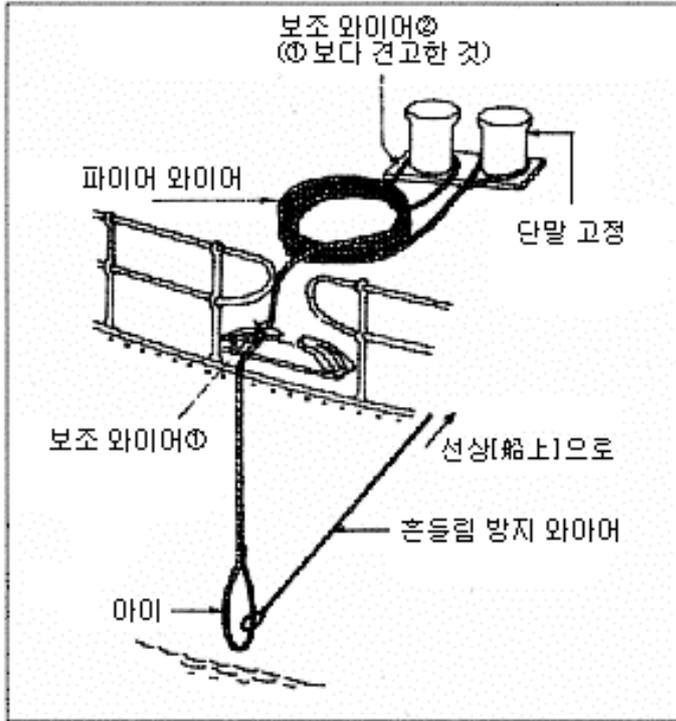
W1064 이라코수도

제 2 그림 위치통보 라인

명칭	약칭	위치
이세만구[伊勢湾口] 남	IS라인	이지카등대에서 90° 20.5km의 지점까지 그은 선
이세만구[伊勢湾口] 동	IE라인	오야마 삼각점에서 180° 17.7km의 지점까지 그은 선
나카야마수도 동	NE라인	다쓰마자키 등대에서 사쿠시마 남단까지 그은 선
모로자키수도 남	MS라인	사쿠시마 남단에서 하즈미사키까지 그은 선
이세만구[伊勢湾口] 북	IN라인	도요하마항 나카스 앞바다 방파제 서등대에서 217° 11.1km의 지점까지 그은 선
이세만구[伊勢湾口] 서	IW라인	도시지마 서단에서 0° 13.3km의 지점까지 그은 선
스가시마수도 동	SE라인	스가시마 동단에서 도시지마 남동단까지 그은 선



제3 그림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 예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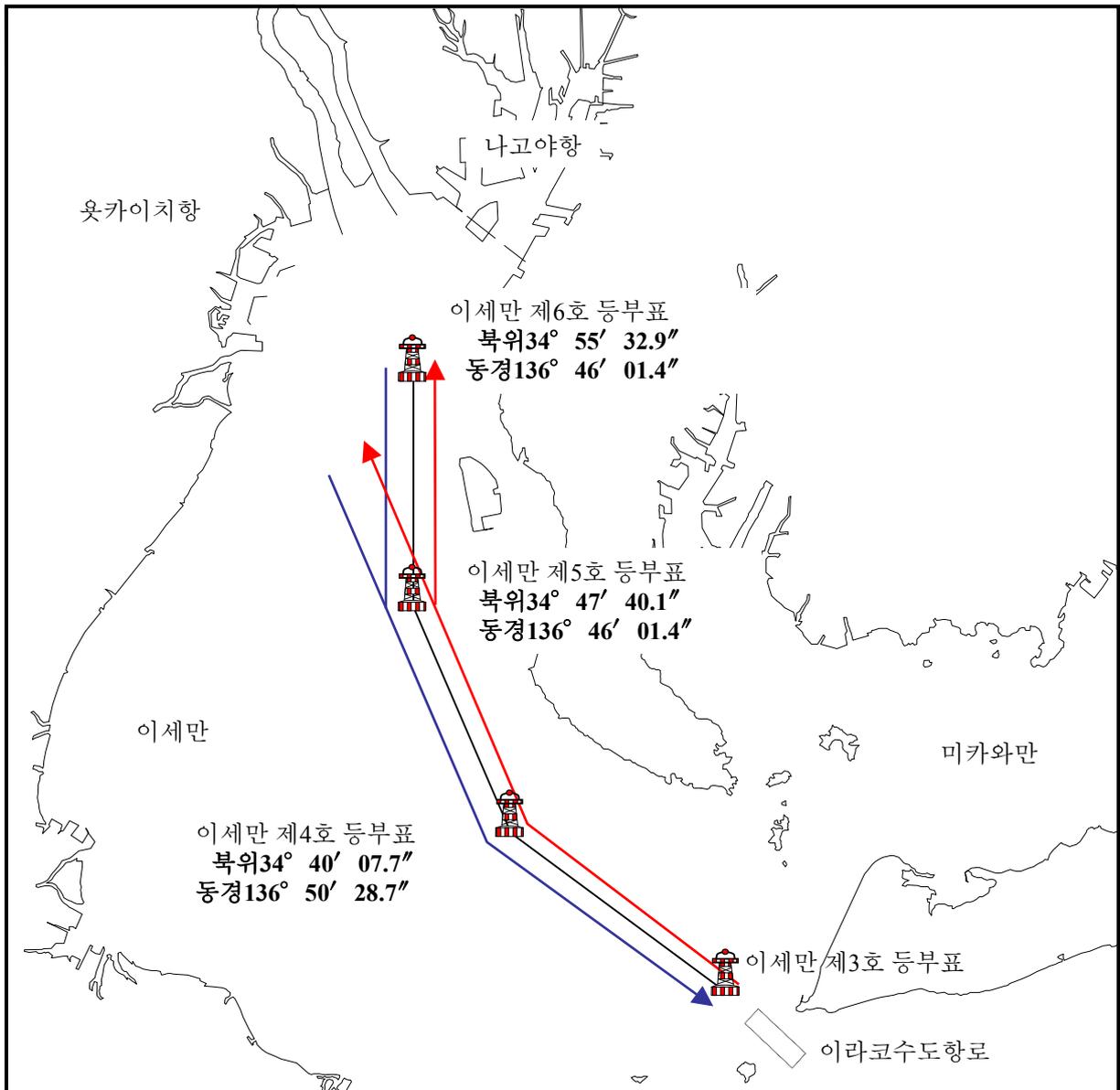
파이어 와이어가 저절로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 와이어를 설치할 것. 이 경우의 ①은 시용시 인력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이고 ②는 예인선(tugboat)의 예인력(曳引力)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일 것.

○ 이세만에서의 항법에 대하여

2007년 2월 19일
제4관구해상보안본부

이세만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과 같은 항행방법에 따를 것.

- (1) 나고야항과 이라코수도와 사이를 남향 또는 북향하고자 하는 선박은 이세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각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항과할 것.
- (2) 옷카이치항과 이라코수도와 사이를 남향 또는 북향하고자 하는 선박은 이세만 제4호, 및 제5호의 각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항과할 것.



○ 나고야항 및 부근해역

제 4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나고야항내에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고야항해상교통센터 (이하 이 장에서는 「센터」라고 한다.) 에서 통보 수리의 사무를 하는 동시에 위치통보의 권장 등 항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 통보대상선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센터로 통보할 것.

(1) 항칙법에 근거하는 통보

① 사전통보

가. 통보사항

별지를 참조 할 것.

나. 통보방법 (다음 중에서 한 방법으로 통보할 것)

(가) 무선통신에 의한 경우

해상보안청 통신소 (제 4 관구해상보안본부) 에서 접수한다. 또한 VHF 무선전화로 센터와 교신하는 경우에는 「나고야보안」을 호출하고 센터로 접속을 의뢰하여 직접 교신할 것.

통신소	통신수단	식별신호	호출 주파수	통신 주파수
제 4 관구 해상보안본부	VHF 무선전화	나고야보안	156.80MHz(CH16)	156.60MHz(CH12)

(나) 서면에 의한 경우

센터로 직접 가져 오는 방법 이외도 우송, 팩스로 하는 방법이 있다.

〒455-0848 나고야시 미나토구 긴조부두 3 초메 1 번

나고야항해상교통센터

팩스 052-398-0716

전화 052-398-0715 (계획 탁)

(우송 또는 팩스로 하는 경우에는 통보 후 센터에 대하여 관제시간을 확인할 것.)

(다) 전자신청에 의한 경우

Sea-NACCS 센터로 신청하여 ID 및 페스워드 취득을 요한다.

(연락처) http://www.naccs.jp/info/info_tricorn.html

② 변경통보

· 사전통보에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즉시 변경통보를 할 것.

· 수로입항예정시각 또는 운항개시예정시각의 변경에 대해서는 10 분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통보할 것.

(2) 위치통보

정보제공을 적절히 하기 위하여 레이더로 각 선박을 식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보대상선박은 위치통보를 할 것.

다만, AIS 를 탑재하여 적절히 운용하는 선박 (정보제공가능해역※에 표박하고 있는 선박 및 계류시설에서의 출항선은 제외) 에 대해서는 AIS 로 정보를

송신하는 것으로 위치통보를 대체할 수 있다.

※ 정보제공 가능해역이란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가능한 해역(레더에 의해 선박의 동정이 파악가능한 해역)으로 고시로 정해진 해역 (제 4 그림 참조)

가. 통보대상선박, 통보시기 및 통보수단

	통보대상선박	통보시기	통보수단
입항의 경우	•길이 50m 이상의 선박 •길이 50 m 이상의 물건예항선 등※	•위치통보라인 통과시 • 정보제공가능해역에 묘박하고 있는 선박은 운항개시 30분전및 운항개시때	•VHF 무선전화 호출명칭 「나고야하버레이더」 호출 주파수 156.8MHz(CH16) 통신 주파수 156.7MHz(CH14) 161.7MHz(CH22) 156.65MHz(CH13)
출항의 경우	•길이 50m 이상의 선박 •길이 50 m 이상의 물건예항선 등※	• 해람 30 분전및 해람시 • 정보제공가능해역에 묘박하고 있는 선박은 운항개시 30분전및 운항개시때	•전화 052-398-0712(운용탁)

※ 예인선의 뱃머리부터 해당 예인선이 당기는 물건의 후단까지 또는 밀기선의 선미로부터 물건의 첨단까지의 거리가 50 미터 이상인, 선박, 뗏목 그 외의 물건을 당기거나, 밀며 항행하는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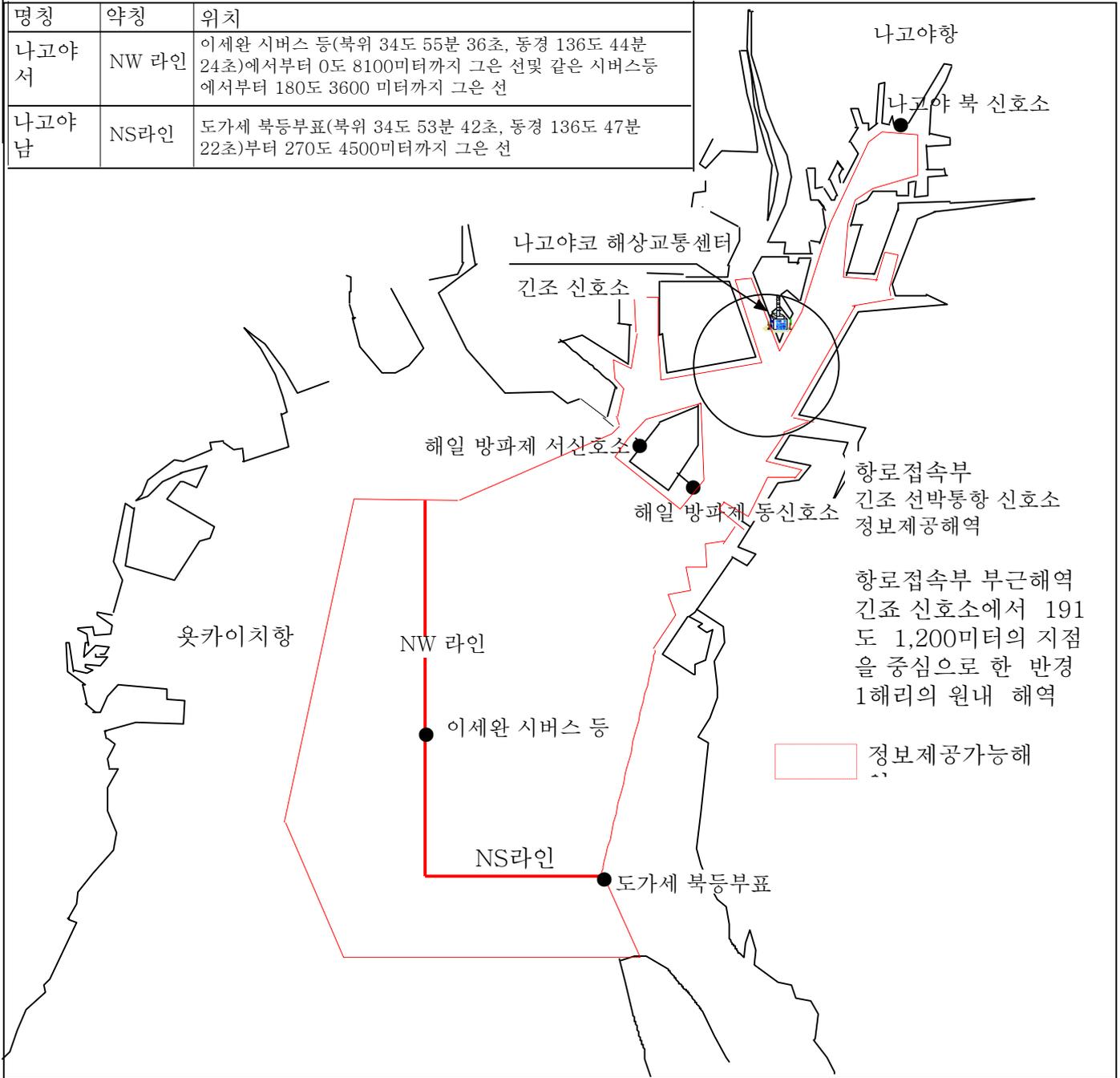
나. 통보사항

입항의 경우	① 선박명 및 호출부호
	② 위치통보라인(제 4 그림 참조)통과시각 또는 운항개시시각
	③ 위치통보라인의 약칭(NW 라인, NS 라인)
	④ 안벽의 명칭 또는 묘박위치
	⑤ 통항예정항로명(동항로, 서항로, 북항로)
출항의 경우	① 선박명 및 호출부호
	② 운항개시시각
	③ 안벽의 명칭 또는 묘박위치
	④ 통항예정항로명(동항로, 서항로, 북항로)

2 상교통센터와의 연락 유지

VHF 무선전화를 비치한 선박은, 센터 (나고야 하버 레이더) 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가능해역에 있어서, 156.80MHz (CH16) 를 청취, 센터와의 연락을 유지 할 것. 또한, CH16 이 폭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CH13 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 을 비치한 선박은 CH16 과 함께 CH13 을 청취 할 것.

제 4 그림 정보제공가능해역 및 위치통보라인



○ 아카시해협항로 및 부근해역

제 5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 등을 실시한다.

1. 수로안내인의 승선
다음에서 언급하는 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킬 것.
 - (1) 외국선박
 - (2) 운항경험 및 입항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선장이 승선하는 일본선박
2. 진로경계선 등의 배치
항로 출항 후에도 안전한 항행이 확인될 때까지 진로경계선 등을 배치할 것.
3. 항로 출입구 부근해역에서의 항법
항로내를 항행하는 선박은 항로항행의무가 없는 전장 50 미터 미만의 선박이더라도 가능한 한 항로 입구에서 입항할 것.
4.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의 준비 (제 3 그림 참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험물적재선은 오사카만, 하리마탄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선수 및 선미에 각각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FIRE WIRE) 를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할 것.
5. 위치 통보 (제 5 그림 참조)
길이 50 미터 이상의 선박(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및 길이가 100 미터 이상의 물건예항선등(선박 자동 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은, 최초의 위치통보 라인을 통과했을 시에, 오사카만 해상교통센터에 위치통보를 할 것.
< 통 보 사 항 >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 나. 현재위치 또는 통과한 위치통보라인의 약칭 및 통과시각 (일본표준시 24 시제)
 - 다. 행선지
6. 오사카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유지
 - (1) 정보제공
VHF 무선전화 (CH16, 156.8MHz) 를 비치한 선박은, 오사카만해상교통센터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오사카만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을 유지할 것.
또 CH16 이 폭주[輻輳]하고 있는 경우에는 오사카만해상교통센터에서 CH13 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 을 비치한 선박은 CH16 과 함께 CH13 을 청취할 것.

(2) 안개정보

아카시해협, 도모가시마수도, 나루토해협, 한신항 오사카구, 한신항 사카이센보쿠구, 한신항 고베구, 히메지항 및 와카야마 시모쓰항의 시계가 2000 미터 이하가 된 경우에 다음의 기관에서 임시방송하고 있다.

제 5 관구해상보안본부 (고베보안) F3E 156.6MHz (CH12) 일본어, 영어

(3) 신문

고베신문 (조건)

내용 : 거대선통과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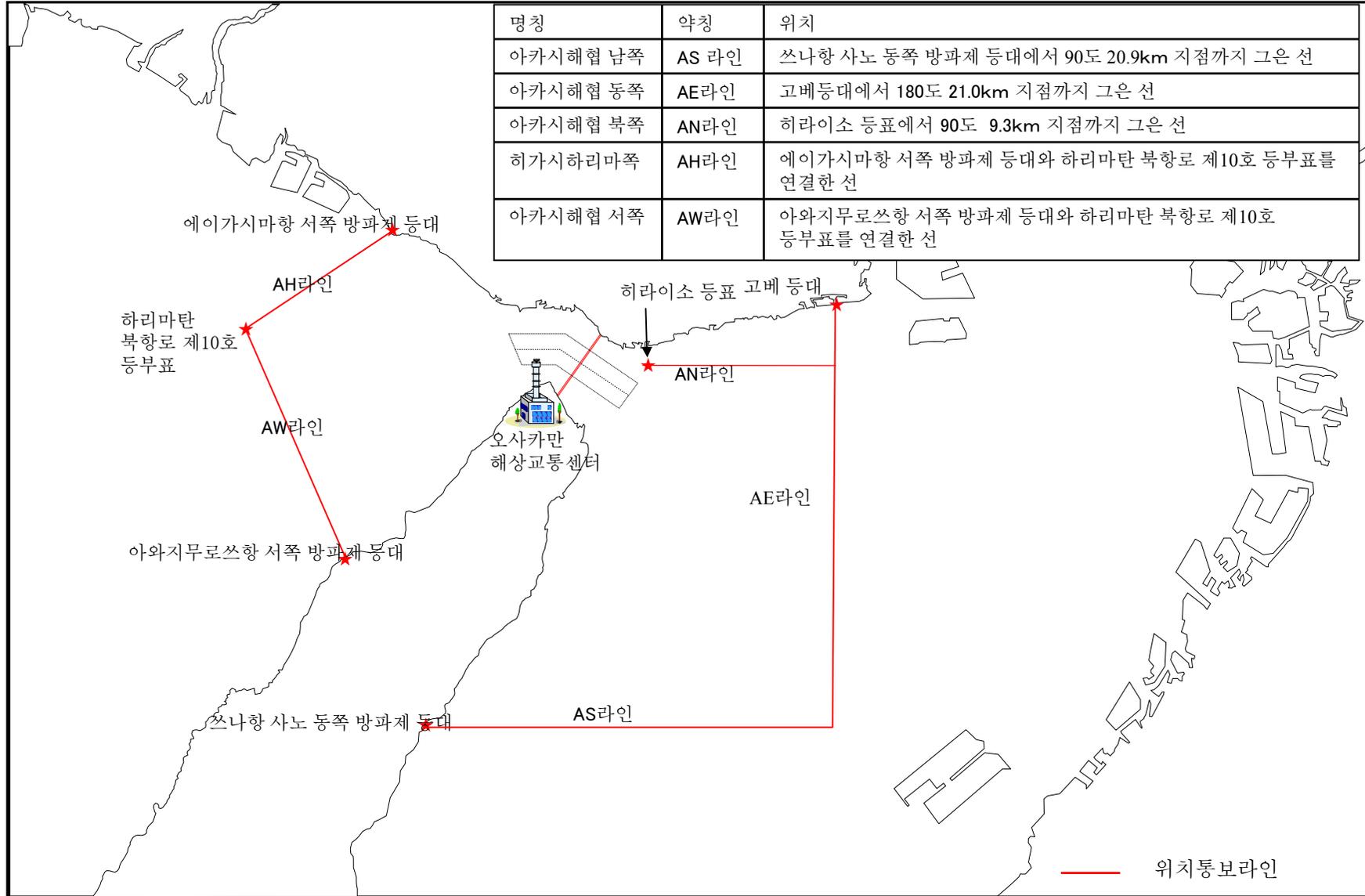
7. 해도 등의 비치

오사카만에 입만[入灣]하는 선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해도 등(항행예정해역이 기재된 것)을 비치하여 최신의 항만사정을 사전에 파악할 것.

해도 등의 번호 (해상보안청 발행)

W77	기이수도 및 부근
W106	오사카만 하리마탄
W131	아카시해협 및 부근
W150A	오사카만
W150C	기이수도

제5 그림 레이더서비스구역 및 위치통보라인



○ 비산세토동항로, 비산세토북항로, 비산세토남항로,
우코동항로, 우코서항로, 미즈시마항로 및 부근해역

제 6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수로안내인의 승선

다음에서 언급하는 외국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킬 것.

(1) 위험물적재선

(2) 세토내해를 처음으로 항행하는 선장이 승선하는 선박

2. 진로경계선 등의 배치

항로 출항 후에도 안전한 항행이 확인될 때까지 진로경계선 등을 배치할 것.

3. 항로 출입구 부근해역에서의 항법

항로 출입구 부근에서는 횡단을 하지 말고 우회할 것.

4. 통항시간의 제한 (해상교통안전법 제 23 조에 따른 지시)

거대선은 주간(昼間)에 항로를 항행할 것.

5.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의 준비(제 3 그림 참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한 위험물적재선은 선수 및 선미에 각각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FIRE WIRE) 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 놓을 것.

6. 위치통보 (제 6 그림 참조)

길이 50 미터 이상의 선박(총톤수 300 톤 미만의 선박 및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및 길이 100 미터이상의 물건예항선등(선박자동식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는, 최초의 위치통보라인을 통과했을 시에 비산세토해상교통센터에 위치통보를 할 것.

< 통 보 사 항 >

가. 선명

나. 현재위치 또는 통과한 위치통보라인의 약칭 및 통과시각(일본표준시 24 시제)

다. 항행 예정 항로·해역 및 목적항

7. 비산세토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유지

(1) **V H F 무선전화 (CH16, 156.8MHz)** 를 비치한 선박은, 비산세토해상교통센터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비산세토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을 유지 할 것.

또 CH16 이 폭주[輻輳]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산세토해상교통센터에서 CH13 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 을 비치한 선박은 CH16 과 함께 CH13 을 청취할 것.

(2) 라디오방송

다음과 같은 방송국에서 거대선의 항로항행예정을 방송하고 있다.

가. NHK 히로시마방송국 제 1 방송	1,071kHz	평일 1850~1900
나. 동[同] 오카야마방송국 제 1 방송	603kHz	매일 1850~1900
다. 동[同] 다카마쓰방송국 제 1 방송	1,368kHz	매일 1755~1800

(3) 안개정보

비산세토의 시계가 2,000 미터 이하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임시 방송하고 있다.

가. 제 6 관구해상보안본부 (히로시마보안) F3E 156.6MHz (CH12)	일본어, 영어	
나. NHK 히로시마방송국 제 1 방송	1,071kHz	일본어
다. 동[同] 오카야마방송국 제 1 방송	603kHz	일본어
라. 동[同] 야마구치방송국 제 1 방송	675kHz	일본어
마. 동[同] 마쓰야마방송국 제 1 방송	963kHz	일본어
바. 류고쿠방송 히로시마방송국	1,350kHz	일본어
사. 동[同] 후쿠야마방송국	1,530kHz	일본어

8. 해도 등의 비치

세토내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해도(항행예정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비치하여 최신의 항만사정을 사전에 파악할 것.

해도 번호 (해상보안청 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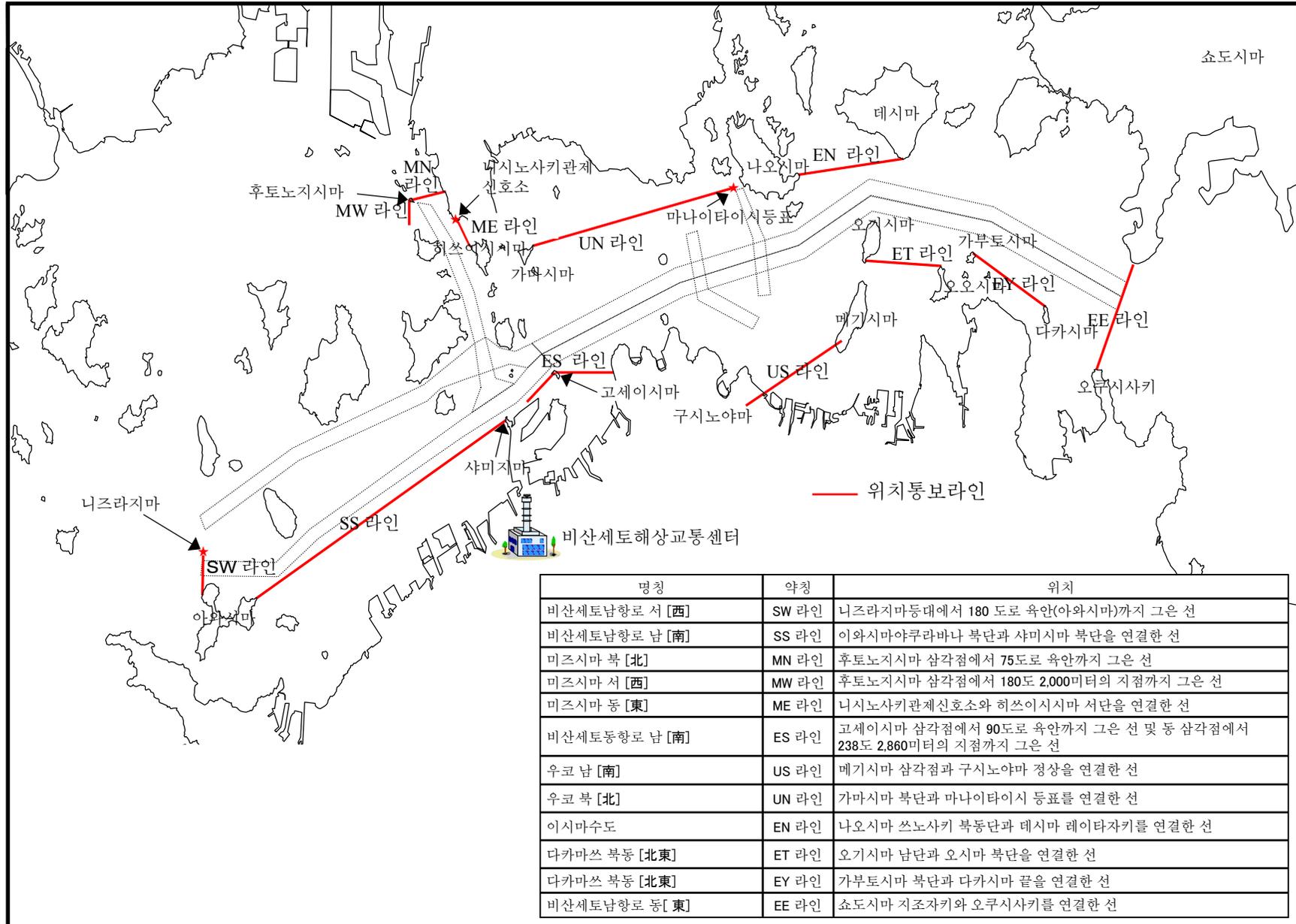
W104	구루시마해협 및 부근
W132	구루시마해협
W137A	비산세토 동부
W137B	비산세토 서부
W141	아키타 및 부근
W152	오바타케세토
W153	비산세토 및 빈고탄
W154	우노항 및 부근
W1102	이요탄 및 부근
W1108	아키타 및 히로시마만
W1116	미즈시마항 및 부근
W1121	사카이데항
W1122	나베시마 부근
W1127A	미즈시마항
W1218	벳부만, 우스키만 및 부근

9. 외국선의 항행

외국선이 세토내해를 항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파악하여 항행할 것.

- (1) 적절한 경계 및 선위 확인 또 VHF 청취의 시행 등 기본적인 사항
- (2) 세토내해에서의 기상·해상의 특성등 항행상의 유의사항
- (3) 비산세토해역에서의 「고마세아미 어선」 조업
- (4) 항로주변해역에서의 「사와라나가시야미 고기잡이」 조업

제 6 그림 위치통보라인



명칭	약칭	위치
비산세토남향로 서 [西]	SW 라인	니즈라지마등대에서 180도로 육안(아와시마)까지 그은 선
비산세토남향로 남 [南]	SS 라인	이와시마야쿠라바나 북단과 사미시마 북단을 연결한 선
미즈시마 북 [北]	MN 라인	후토노지시마 삼각점에서 75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미즈시마 서 [西]	MW 라인	후토노지시마 삼각점에서 180도 2,000미터의 지점까지 그은 선
미즈시마 동 [東]	ME 라인	니시노사키관제신호소와 히쓰이시시마 서단을 연결한 선
비산세토동향로 남 [南]	ES 라인	고세이시마 삼각점에서 90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및 동 삼각점에서 238도 2,860미터의 지점까지 그은 선
우코 남 [南]	US 라인	메기시마 삼각점과 구시노야마 정상을 연결한 선
우코 북 [北]	UN 라인	가마시마 북단과 마나이타이시 등표를 연결한 선
이시마수도	EN 라인	나오시마 쓰노사키 북동단과 데시마 레이타자키를 연결한 선
다카마쓰 북동 [北東]	ET 라인	오기시마 남단과 오시마 북단을 연결한 선
다카마쓰 북동 [北東]	EY 라인	가부토시마 북단과 다카시마 끝을 연결한 선
비산세토남향로 동 [東]	EE 라인	쇼도시마 지조자키와 오쿠시사키를 연결한 선

○ 구루시마해협항로 및 부근해역

제 6 관구 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수로안내인의 승선

다음에서 언급하는 선박은 수로안내인을 승선시킬 것.

(1) 위험물적재선

(2) 세토내해를 처음으로 항행하는 선장이 승선하는 선박

2. 진로경계선 등의 배치

항로 출항 후에도 안전한 항행이 확인될 때까지 진로경계선 등을 배치할 것.

3. 항로 출입구 부근해역에서의 항법

항로 출입구 부근에서는 횡단을 하지 말고 우회할 것.

4. 통항시간의 제한 (해상교통안전법 제 23 조에 따른 지시)

거대선은 주간 게류시[憩流時] 또는 배 뒤에서 느린 조류를 받을 때(약순조[弱順潮] 때)에 나카스이도를 항행할 것.

5.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의 준비 (제 3 그림 참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해진 위험물적재선은 선수 및 선미에 각각 긴급용 파이어 와이어 (FIRE WIRE) 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할 것.

6. 구루시마해협 항행시의 유의사항 (제 7, 8 그림 참조)

(1)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하여 항행계획을 세울 것.

가. 가능한 한 조류가 바뀌지 않을 때에 항로를 항행할 것.

나. 조류가 강할 때에는 최대한 수도부를 항행하지 말 것.

(2) 남류시[南流時]에 항로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로내에서 우현 대우현[右舷 対 右舷]이 되는 것이므로 항로 입구에서 떨어진 넓은 수역에서 충분히 확인한 후에 유향(流向)에 따른 경로로 이행할 것.

또 항로를 출항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운항에 노력할 것.

- (3) 항로입항 후에 조류[潮流] 바뀐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할 것.
 - 가. 주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히 유향(流向)에 따른 경로로 이행할 것.
 - 나. 우마시마에 근접한 해역에서는 가능한 한 변침하지 말 것.
- (4) 항로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통보할 것.
 - 가. 출발항
 - 나. 항로 항행 중의 수로안내인의 유무
 - 다. 위험물 적재선으로 총톤수 50,000톤 (적재하고 있는 위험물이 액화가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총톤수 25,000톤)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 흘수[喫水]
- (5) 항로통보를 한 선박이 항로입항예정시각 3시간 전 이후에 항로입항예정시각을 10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통보를 할 것.

7. 위치통보 (제 9 그림 참조)

길이 50 미터 이상의 선박 및 전장 100 미터 이상의 물건예항선등 (선박자동식 별장치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은, 최초의 위치통보 라인을 통과했을 시에, 구루시마해협해상교통센터에 위치통보를 할 것.

<통 보 사 항>

- 가. 선명
- 나. 현재위치 및 위치통보라인의 약칭 및 통과시각 (일본표준시 24 시제)
- 다. 항행 예정 항로·해역 및 목적항

8. 구루시마해협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유지

(1) 정보제공

V H F 전화 (CH16、156.8MHz) 를 비치한 선박은, 구루시마해협해상교통센터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구루시마해협해상교통센터와의 연락을 유지 할 것.

또 CH16 이 폭주[輻輳]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루시마해협해상교통센터에서

CH13 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 을 비치한 선박은 CH16 과 함께 CH13 을 청취할 것.

(2) 안개정보

구루시마해협 의 시계가 2,000 미터 이하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임시 방송하고 있다.

가. 제 6 관구해상보안본부 F3E 156.6MHz (CH12) 일본어, 영어
(히로시마보안)

나.	N H K	히로시마방송국	제 1 방송	1,071kHz	일본어
다.	동[同]	오카야마방송국	제 1 방송	603kHz	상 동
라.	동[同]	야마구치방송국	제 1 방송	675kHz	상 동
마.	동[同]	마쓰야마방송국	제 1 방송	963kHz	상 동
바.	쥬고쿠방송	히로시마방송국		1,350kHz	상 동
사.	동[同]	후쿠야마방송국		1,530kHz	상 동

9. 해도 등의 비치

세토내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해도(항행예정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치하여 최신의 항만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놓을 것.

해도 번호 (해상보안청 간행)

W104	구루시마해협 및 부근
W132	구루시마해협
W137A	비산세토 동부
W137B	비산세토 서부
W141	아키탄 및 부근
W152	오오바타케세토
W153	비산세토 및 빈고탄
W154	우노항 및 부근
W1102	이요탄 및 부근
W1108	아키탄 및 히로시마만
W1116	미즈시마항 및 부근
W1121	사카이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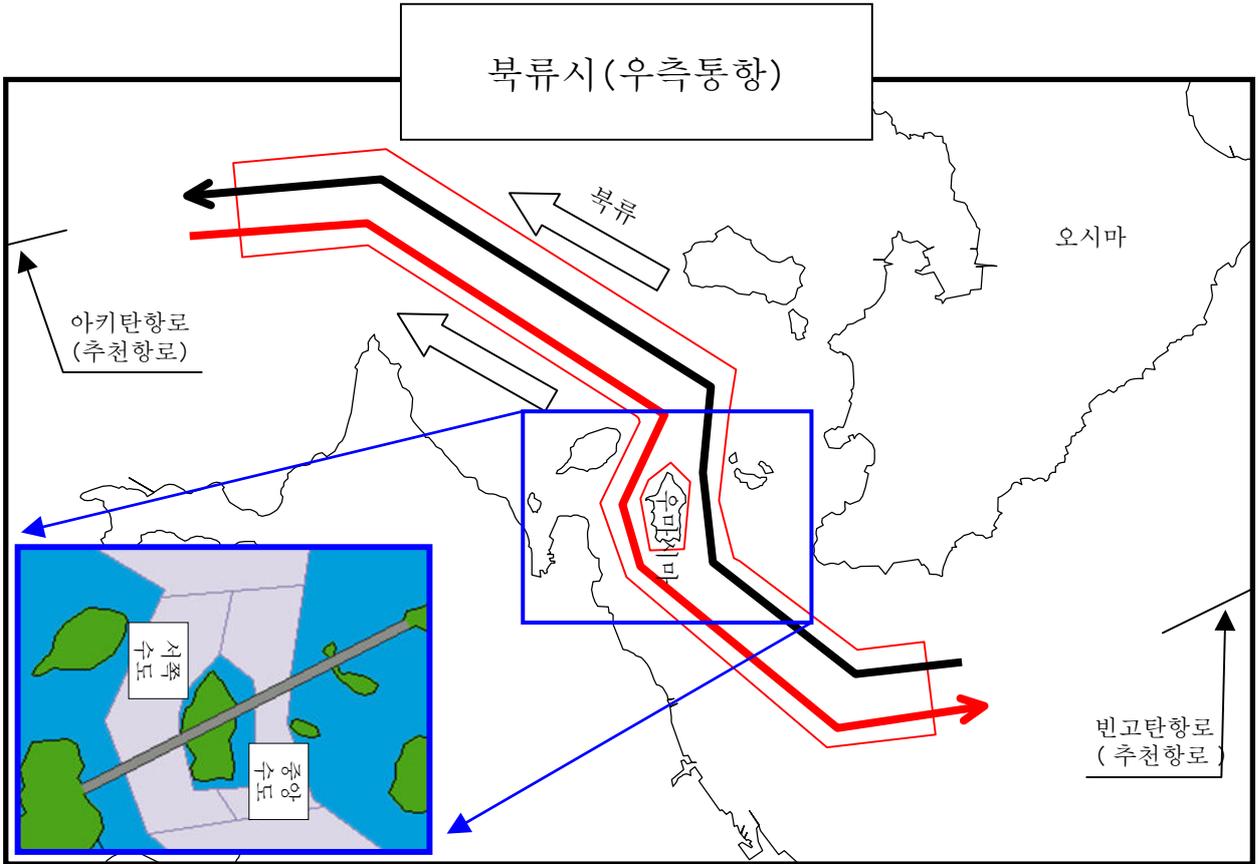
W1122	나베시마 부근
W1127A	미즈시마항
W1218	벳부만, 우스키만 및 부근

10. 외국선의 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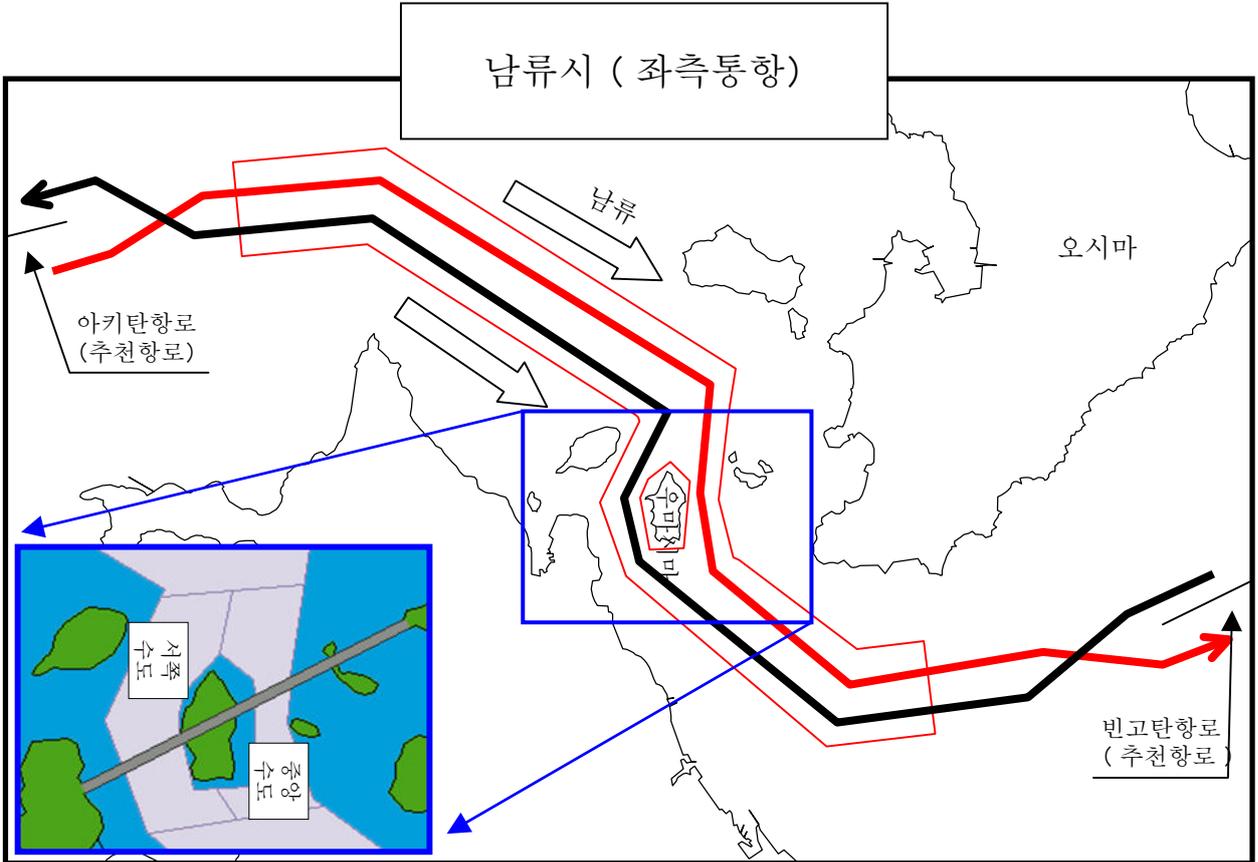
외국선이 세토내해를 항행할 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파악하여 항행할 것.

- (1) 적절한 경계[把守]의 권장 및 선위 확인, 또 VHF 청취 등 기본적인 사항
- (2) 세토내해에서의 기상·해상의 특성 등 항행상의 유의사항
- (3) 구루시마해협항로의 항법 (준중역서)
- (4) 비산세토해역에서의 「고마세아미 어선」 조업
- (5) 항로주변해역에서의 「사와라나가시아미 고기잡이」 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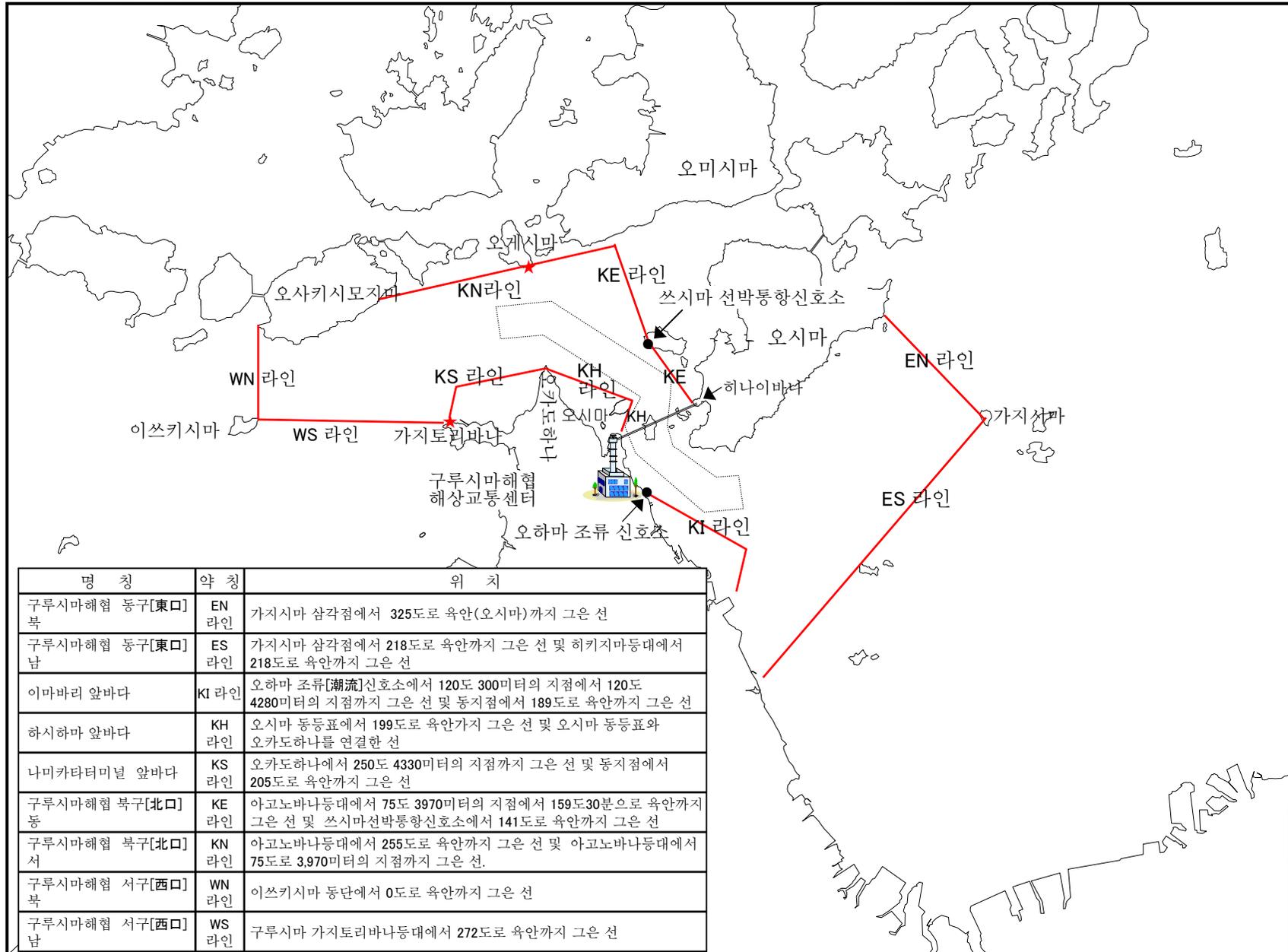
제7 그림



제8 그림



제 9 그림 위치통보 라인



○ 나오시마 수도

제6관구해상교통보안본부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오시마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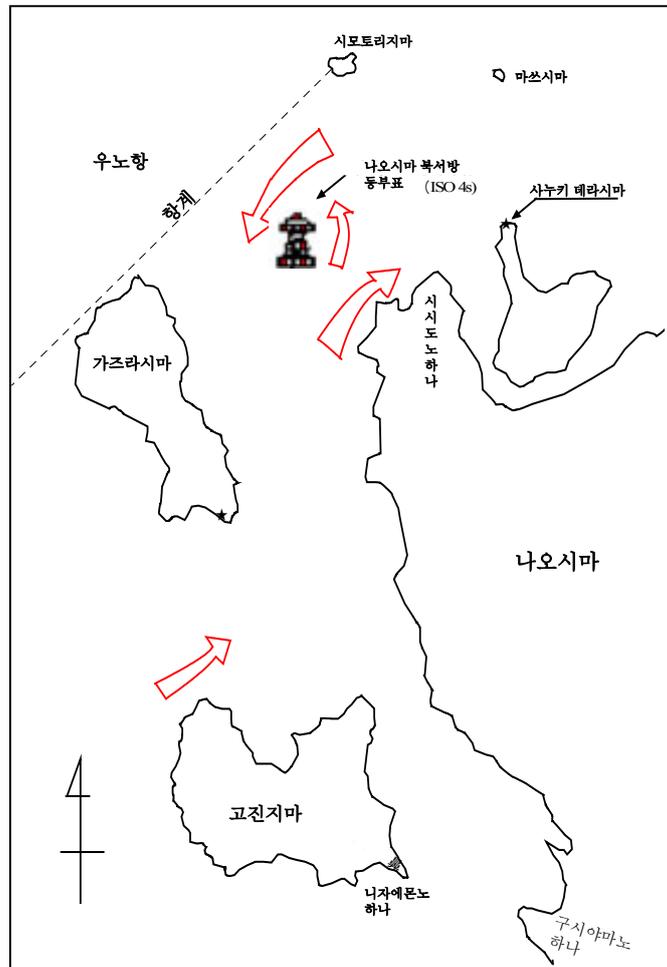
• 나오시마수도에서의 항법 (제10그림 참조)

나오시마와 가즈라시마 간을 통과하는 선박은 나오시마 북서방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항행할 것.

(일반적인 주의사항)

1. 가즈라시마와 고진지마 간을 동향하는 선박은 안전하고 실행에 적합하는 한 고진지마 북서단 쪽으로 접근하여 항행할 것.
2. 나오시마 북서방 등부표 부근에서는 최대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말 것.
3. 우노항에서 동향하는 선박의 동향에 주의할 것.

제10그림 나오시마수도에서의 항법



○ 간몬해역 및 부근해역

제 7 관구해상보안본부는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 간몬해협해상교통센터 (이하[센터]라고 함)에의 통보(제 1 1 그림 참조)

(1) 항칙법에 근거하는 사전통보 및 변경통보의 방법등

이하의 방법으로 통보 할 것.

① 통보양식

별지 1 을 참조 할 것.

② 통보 방법

a 무선통신에 의한 경우

해상보안청 통신소 (제 7 관구해상보안본부) 에서 접수한다.

통신소	통신수단	식별신호	호출주파수	통신주파수
제 7 관구 해상보안 본부	VHF 무선전화	모지보안	156.80MHz (CH16)	156.60MHz (CH12)

또 VHF 무선전화로 센터와 교신하는 경우에는 「모지보안」 을 호출해 센터와의 접속을 의뢰해서 직접 교신할 것.

통보의 첫 머리에 센터 소장의 약어 「간몬카이쿄」 를 서론 해, 통보내용은, 사전통보 양식의 각 항목의 번호를 붙여서 통보 할 것.

b 서면에 의한 경우

하기에 지참 또는 우송 할 것.

〒 8 0 0 - 0 0 6 4 기타큐슈시 모지구 마쓰바라 2 초메 10-11

간몬해협 해상교통센터 운용 관제과

c 전화에 의한 경우

전화번호 0 9 3 - 3 7 2 - 0 0 9 0 (또는, - 0 0 9 9)

F A X 번호 0 9 3 - 3 8 1 - 4 4 9 9

d 전자신청에 의한 경우

S e a - N A C C S 센터로 신청하여, I D 및 페스워드의 취득을 요한다.

(연락처) http://www.naccs.jp/info/info_tricorn.html

③ 변경통보의 방법등

별지 1 중에, ①~⑤는 법정통보 사항이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하야토모노세토 수로 입구 도달 예정시각 (③) 에 대해서 15 분 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변경통보의 방법은, 무선통신의 경우, 센터소장의 약칭 「간몬카이쿄」 에 이어 「헨쿄」 를, 전화의 경우는 「헨쿄」 를 서론 하는 것 외에는, 사전통보와 같다.

(2) 위치통보

① 위치통보 대상선박, 통보시기 및 통보사항

다음표의 구분에 의해 위치통보라인 통과 또는 운항개시시에 센터에 위치통보를 실시 할 것. 통보대상이 아닌 선박이 위치통보를 실시해도 지장이 없다.

또한 운항개시시란, 간몬항로 또는 간몬 제 2 항로에 입항하기 위해 이암[離岸] 또는 출항해, 동항로를 향해 출발 했을 때를 말한다.

통보하는 선박의 구분	통보하는 시기	통보사항
간몬항의 항 구역 외에서 간몬항로 및 관문 제 2 항로로 입항해하려고 하는 총톤수 300 톤 이상 1 만 톤 미만(송유선에 있어서는 총톤수 3 천톤 미만)의 선박(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위치통보라인 통과시.	선명, 호출 부호, 통과위치 통보라인 약칭, 총톤수, 흘수, 행선지
간몬항의 항 구역 외에서 간몬항로 및 간몬 제 2 항로로 입항해하려고 하는 총톤수 1 만 톤(송유선에 있어서는 총톤수 3 천톤) 이상의 선박.		선명, 호출부호, 통과 위치 통보라인 약칭
간몬항(히비키신 항내 및 신모지구는 제외)을 출항하는 총톤수 300 톤 이상의 선박.	운항개시시. 다만, WA 라인라인으로부터 서쪽의 해역에서 와카마즈 항로를 출항하는 선박은 WA 통과시, 쇼후구로부터 출항하는 선박은 CS 라인통과시.	선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통보라인 약칭, 총톤수, 흘수, 행선지
간몬 항로 및 간몬 제 2 항로를, 물건을 예항(밀거나, 옆에서 끄는것도 포함) 하며 항행하는 선박(AIS 를 탑재해,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	위치통보라인 통과시. 다만, 출항선은 운항 개시시, WA 라인으로부터 서쪽의 해역에서 와카마즈 항로를 출항하는 선박은 WA 라인통과시, 쇼후구로부터 출항하는 선박은 CS 라인통과시.	선명, 호출부호, 통과위치 통보라인 약칭, 총톤수, 흘수, 행선지, 예항 전체 길이

② 통보방법

a 무선통신에 의한 경우

VHF 무선전화로 교신 하는 경우는, 「간몬마티스」 를 호출해, 통보의 첫머리에 「이치즈호」 를 서론해 통보 할 것.

통신소	통신수단	식별신호	호출주파수	통신주파수
간몬해협 해상교통센터	VHF 무선전화	간몬마티스	156.80MHz (CH16)	156.65MHz (CH13)
			156.65MHz (CH13)	156.70MHz (CH14) 161.70MHz (CH22)

b 전화에 의한 경우

전화번호 093-372-0090 (또는, -0099)

(3) 센터와의 연락유지

VHF 무선전화를 비치한 선박은, 센터 (간몬마티스) 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로 및 항로에 이르는 주요통항로 및 그 주변 해역에 있어서, 156.80MHz (CH16) 를 청취, 센터와의 연락을 유지 할 것.

또한, CH16이 폭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CH13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H13을 비치한 선박은CH16과 함께CH13을 청취 할 것.

(4) 위치통보라인

위치 통보의 시기에 이용하는 위치통보 및 위치는 다음 표를 참조 할 것.

명 칭	약 칭	위 치
신문지 북	SN라인	다케노하나와 신모지 방파제 등대에서 90도 2,150미터의 지점을 연결한 선
신문지 동	SE라인	신모지 방파제 등대에서 90도 2,150미터의 지점과 동(同)등대에서 90도 8,150미터의 지점을 연결한 선
헤사키 남동	HS라인	신모지 방파제 등대에서 90도 8,150미터의 지점과 류오산 삼각점에서 215도 3,950미터의 지점을 연결한 선
오노다 서	OW라인	류오산 삼각점에서 215도 3,950미터의 지점과 동(同) 삼각점에서 240도 4,350미터의 지점을 연결한 선
쵸후 남	CS라인	만쥬시마등대와 간쥬시마 남단을 연결한 선
무쓰레지마 북	MN라인	다음과 같은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무쓰레지마등대 2. 무쓰레지마등대에서 0도 6,930미터의 지점 3. 구루미세등표
아이노시마 남	AS라인	아이노시마 남단과 가타시마 북단을 연결한 선
시라스 남	SS라인	시라스등대에서 180도로 육안까지 그은 선
와카마쓰 북	WA라인	다음과 같은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1. 와카마쓰도카이만구 방파제 등대에서 232도 1,630미터의 지점 2. 와카마쓰도카이만구 방파제 등대에서 222도 45분 1,710미터의 지점

사전 (변경) 통보
Advance report (Change report)

간몬해협해상교통센터소장 귀하
(To Kanmon Kaikyo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통보일(Report date)

통보자 (Reporter name)

(Annexed table of report in advance)

법정통보사항 Legal report matters	
① 船명 Name of Vessel	
② 총톤수 및 길이 Gross tonnage and Length	G/T meters
③ 하야토모세토 수로 입구부근 도착예정 시각 Estimated date and time of entry Hayatomo-Seto Waterway (Under Kanmon Bridge)	Date Time :
④ 연락수단 Method of communication	VHF / Tel :
⑤ 간몬항내 정박지 (*) Berth name of Kanmon Port (*)	Berth name:
* 정박예정이 없는 경우 불필요 Not necessary if you do not berth	
임의 통보 사항 Arbitrary report matters	
⑥ 호출부호 Call Sign	
⑦ MMS I	
⑧ 선종 kind of Vessel	
⑨ 출항 안벽[岸壁]명 또는 통과 예정 위치 통보 라인 명칭 및 통과 예정 시각	Departure berth name & Departure time : Entry line name & Passage time : Leaving line name & Passage time :
⑩ 항로 항행시의 최대 흘수[喫水] Maximum draught at the time of transit through the passage	Meters
⑪ 적재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Kinds of dangerous cargo and amount of each type	Kind: m ³ , m ³ , m ³
⑫ 수로안내인 승선 유무 Arrangement of pilot	Yes / No

Note: If there is any change in Legal report matters (No.①~⑤), report to Kanmon Kaikyo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But, it is unnecessary to report changing of less than 15 minutes about No.③.

2 와카마쓰 항내 교통 관제실등 (이하 「관제실」 이라고 함)에의 통보

(1) 항칙법에 근거하는 사전통보등의 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통보 할 것.

① 통보양식

별지 2 를 참조 할 것.

② 통보방법

a 무선통신에 의한 경우

해상보안청 통신소 (제 7 관구해상보안본부) 에서 접수한다.

통신소	통신수단	식별번호	호출주파수	통신주파수
제 7 관구 해상보안 본부	VHF 무선전화	모지보안	156.80MHz (CH16)	156.60MHz (CH12)

또, VHF 무선전화로 관제실과 교신하는 경우는, CH 1 2 「와카마쓰코나이보안」
을 호출해 직접 교신 할 것.

통보의 첫 머리에 와카마쓰 항내 교통관제 실장의 약어 「와카마쓰칸세이」 를 서론
해, 통보내용은, 사전통보 양식의 각 항목의 번호를 붙여서 통보 할 것.

변경통보의 방법은, 무선통신의 경우, 와카마쓰 항내 교통관제 실장의 약어 「와카
마쓰칸세이」 에 이어 「헨코」 를, 전화의 경우 「헨코」 를 서론 하는 것 외에는,
사전통보와 같다.

b 서면에 의한 경우

하기에 지참 또는 우송

〒 8 0 4 - 0 0 5 3 가타큐슈시 토바타구 아키야마 5 초메 1 - 3

와카마쓰 항내 교통 관제실

c 전화에 의한 경우

전화번호 0 9 3 - 8 7 1 - 2 4 8 2

F A X 번호 0 9 3 - 8 8 1 - 6 0 9 4

d 전자신청에 의한 경우

S e a - N A C C S 센터로 신청하여 ID 및 패스워드의 취득을 요한다.

(연락처) http://www.naccs.jp/info/info_tricorn.html

(2) 간몬 해협 해상 교통 센터에의 위치 통보

WA 라인으로부터 서쪽의 해역에서 와카마쓰 항로를 출항하는 총톤수 300 톤 이상의
선박 및 물건을 예항(밀거나, 옆에서 끄는것도 포함)하며 항행하는 선박은, WA 통과시에
간몬해협해상교통센터에 위치 통보를 실시 할 것.

통보의 방법등에 대해서는, 전항 간몬해협해상교통센터에의 통보(2) 「위치
통보」 참조

(3) 관제실과의 연락유지

VHF 무선전화를 비치한 선박은,

와카마쓰항내교통관제실 (와카마쓰코나이보안) 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정보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와카마쓰수로 항행중에는 1 5 6 . 8 0 MHz (CH 1 6) 를
청취, 관제실과의 연락을 유지 할 것.

3 참고 해도의비치

간몬해협의 해도는 다음과 같으며 운항선박은 항상 최신의 해도를 이용할 것.

해도번호 (해상보안청 간행)

W135	간몬해협
W1262	간몬항 동부
W1263	간몬항 중부
W1264	간몬항 북부
W1265	간몬항 와카마쓰
W1267	간몬항 서부

4 시야에 관한 정보

간몬항 및 주변 해역(이하 「관문항등」이라고 한다.)에서, 안개, 강설, 그 외 이와 같이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 시야의 정보를 「안개 통보」로서 제공하고 있다.

안개 통보가 발표된 경우, 간몬항등을 항행하려고 하는 선박은, 경계강화를 실시하는 등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 할 것.

(1) 안개정보의 발표기준

- ① 시정이 2, 0 0 0미터 이하가 된 경우
- ② 시정이 1, 0 0 0미터 이하가 된 경우
- ③ 시정이 5 0 0미터 이하가 된 경우
- ④ 시정이 2, 0 0 0미터 이하가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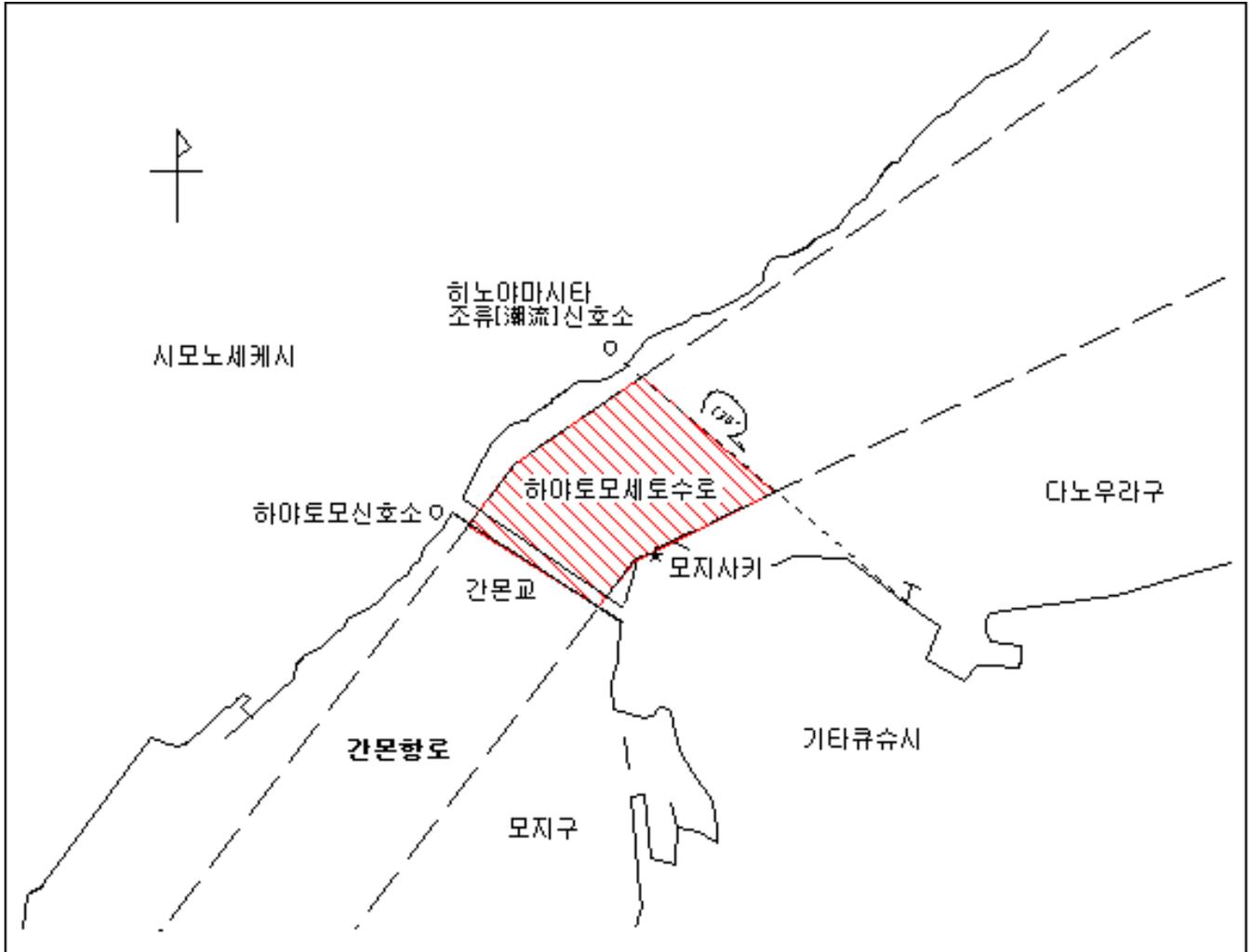
(2) 제공방법

- ① 센터 (간몬마티스) 에서의 제공
 - a VHF 무선전화 (CH 1 6)
 - b MF 무선전화 (라디오) 일본어 (1, 651kHz) 영어 (2, 019kHz)
 - c 전화서비스 (0 9 3 - 3 8 1 - 3 3 9 9)
 - d 센터 청사 전광 표시판
 - e A I S 바이너리 메세지
- ② 제 7 관구해상보안본부(모지보안)에서 VHF 무선전화 (CH 1 6) 에 의한 항행경보
- ③ 순시선정[巡視船艇]

간몬항장은 다음과 같은 항행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하야토모세토수로에서의 교행 조정에 대하여 (제 1 2 그림 참조)
하야토모세토수로 (간몬교 서쪽선과 히노야마시타 조류[潮流]신호소에서 130 도로
그은 선과 사이의 간몬항로)에서 다음과 같은 선박간에는 교행하지 말 것.
 - ① 유조선 이외의 선박간
총톤수 10,000 톤 이상 대 총톤수 10,000 톤 이상
 - ② 유조선간
총톤수 3,000 톤 이상 대 총톤수 3,000 톤 이상
 - ③ 유조선 이외의 선박 대 유송선
총톤수 10,000 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대 총톤수 3,000 톤 이상의 유송선

제12 그림



4. 무쓰레지마 주변해역에서의 가박(假泊)에 대하여(제13 그림 참조)

간몬항에 입항, 혹은 간몬항을 통과하고자 하는 흘수 10미터 이상 또는 총톤수 30,000톤 이상의 선박이며 수로안내인을 기다리거나 적절한 조류(潮流)를 기다리기 위하여 무쓰레지마 주변해역에서 가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박 구역에서 가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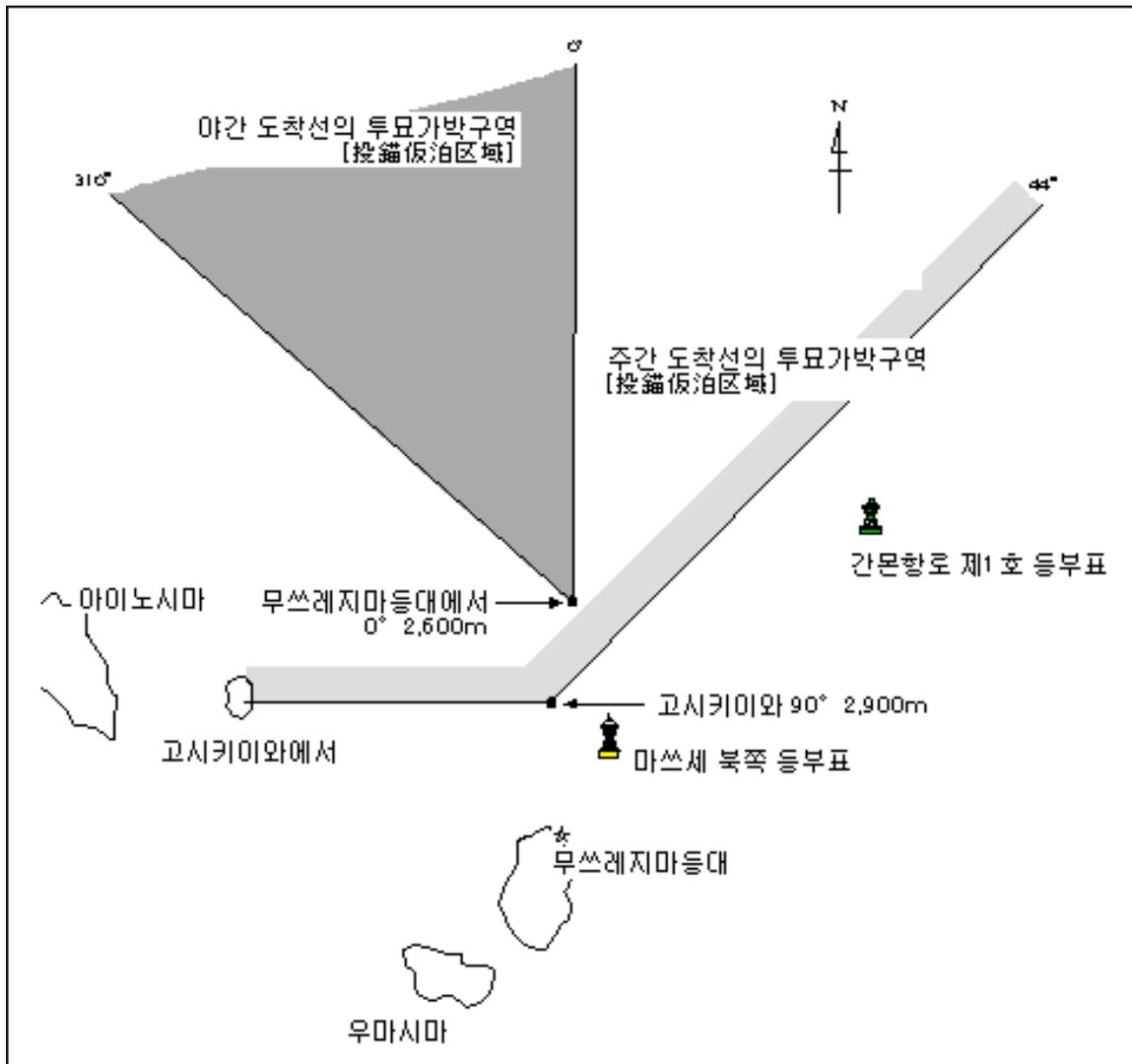
(1)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

고시키이와(북위 33도 59분 17초, 동경 130도 50분 7초)에서 90도로 2,900미터의 지점까지 그은 선, 동(同) 지점에서 44도로 그은 선 이북[以北]의 해역

(2)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사이

무쓰레지마등대에서 0도로 그은 선 이서[以西]이며 또 동(同) 등대에서 0도 2,600미터의 지점에서 310도로 그은 선 이북 [以北]의 해역

제13 그림



2. 간몬항 다이바하나 부근해역에서 해난 방지에 대하여 (제14 그림 참조)

- (1) 간몬제2항로에서 간몬항로 또는 간몬항로에서 간몬제2항로로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조기의 감속 등 적절한 조치를 도모하여 간몬항로를 이에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확실히 피할 것.
- (2) 선박은 다이바하나 부근해역 중에서, 특히 간몬항로 제7호 등부표에서 동(同) 제10호 등부표에 걸친 해역에서 다른 선박을 추월하지 말 것.
- (3) 다이바하나 부근해역에 향하는 선박은 사전에 간몬해협해상교통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에서 항로항행선박의 정보를 입수하여 특수한 선박과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부득이 마주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특수한 선박의 동정을 파악한 후에 충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
- (4) 특수한 선박은 사전에 센터에 자기 선박의 동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다른 선박의 동정에 충분히 주의할 것.
또 경계선을 배치하는 등 엄중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

특수한 선박이란 수심(水深)과 흘수의 관계로 일시적으로 항로 우측을 항행할 수 없는 흘수가 제한된 대형선박이나 조종성능이 떨어진 예항 전장 200미터를 넘는 예항선 등을 말한다.

제14 그림

